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72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김희정 · 김승수 · 박준태
서지영 · 김태호 · 배준영
김도읍 · 강승규 · 엄태영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4.·5. (생략) ③ (생략)</p>	<p><u>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u></p> <p>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